

한중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oling-off Period System of Insurance Contracts between Korea and China

자시니마(扎西尼玛)(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생)

ZHAXI. Nímǎ (Doctoral Student, Dept. of Law,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의의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방법

II.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기본이론

1. 개념과 용어
2. 법적 성질
3. 법리적 기초
4. 기능적 위치

III. 중국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

1. 입법연혁
2. 현행 법규
3. 적용범위

4. 기간의 길이

5. 행사방식과 법적 효과

6. 문제점

IV. 한국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

1. 입법연혁

2. 현행 법규체계

3. 적용범위

4. 기간의 길이와 기산

5. 행사방식

6. 법적 효과

7. 제도적 특징

V. 한중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비교분석

1. 입법체계

2. 적용범위

3. 기간

4. 행사방식

5. 법적 효과

6. 판매오도 구제와의 연결

7. 정보공시 의무

8. 사법실무 및 판례

VI. 중국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VII. 결론

I. 서론

1. 연구배경

21 세기에 들어 보험은 — 특히 장기납입형 생명보험, 배당형 보험,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 — 일반 가계의 자산배분에 광범위하게 편입되어 왔다. 전통적인 손해보험과 달리 이러한 상품들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약관이 복잡하며, 위험과 수익 구조가 일반 소비자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더욱이 보험판매가 오랫동안 모집인의 대면 모집 방식에 의존해 왔던 까닭에, 판매오도(销售误导)·과장설명·일면적 진술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¹.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정보 열위와 판단 시간 부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사후적 구제 비용은 매우 크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현대 국가는 보험입법에 청약철회기간(cooling-off period, 중국법상 “犹豫期”)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성립 후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주고 있다².

한국과 중국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이 분산입법으로부터 체계화 입법으로 진화해 온 공통된 경로를 거쳐왔다. 중국 『보험법』은 1995 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³을 거치며 청약철회 관련 규범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왔고, 한국은 2020 년에

¹樊启荣：《保险合同法论》，中国法制出版社(2017)。

²영국법상 cooling-off period 는 소비자 보험계약의 핵심적 보호장치로서 학설과 판례의 오랜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See BIRDS, John & LYNCH, Ben et al.,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5th ed). Sweet & Maxwell (2022).

³중국 『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은 1995 년 6 월 30 일 제정된 이래 2002 년, 2009 년, 2014 년, 2015 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⁴(이하 『금소법』)을 제정하여 2021 년 3 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을 금융소비자의 핵심권리로 체계화하였다. 양국 제도의 연혁과 규범체계, 구체적 규정이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법적 검토의 이론적·실무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연구의 의의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청약철회기간 제도는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의 가치 형량, 일방적 해지권과 신의성실 원칙의 관계, 정보공시의무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연결 등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내포하므로, 비교 검토를 통해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중국의 인보험 분쟁에서 “판매오도”는 장기간 민원의 최상위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합리적 설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에 직결된다. 셋째,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의 입법 경험은 중국에 의미 있는 참고 모델을 제공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중국 학계의 청약철회기간 연구는 다음 몇 갈래로 정리될 수 있다. 温世扬 교수는 『保险法』 저서에서 청약철회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된 법정 단독 해지권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임의해지권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다⁵; 樊启荣 교수는 청약철회권의 기능적 위치와 적용 경계를 상세히 분석하였고⁶; 邹海林 연구원은 소비자보호

⁴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112 호)은 2020 년 3 월 24 일 제정되어 2021 년 3 월 25 일 시행되었다.

⁵温世扬 : 《保险法》(第 3 版), 法律出版社(2016)。

⁶樊启荣 : 《保险合同法论》, 中国法制出版社(2017)。

시각에서 청약철회권과 고지의무·설명 의무의 법리적 연결을 다루었다⁷. 한국 학계의 경우, 양승규·박세민·김성태 등의 보험법 교과서가 청약철회권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본 제도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⁸. 한·중 양국을 비교 시각에서 다룬 연구는 이미 일정한 축적이 있으나, 특히 2020 년 한국 『금소법』 제정 이후 새로 형성된 규범체계와 그 시행 약 4 년의 운용 경험을 반영한 종합적 비교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고는 기존 비교 연구의 분석 범위를 갱신하고 그 깊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고는 다음의 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규범분석(规范分析): 양국의 현행 법령·하위규정을 텍스트 단위로 해석한다. 둘째, 비교법학적 방법: 입법체계·규범내용·운용기제의 각 차원에서 대조한다. 셋째, 역사적 방법: 양국 제도의 연혁을 추적한다. 넷째, 기능주의적 접근: 실무에서의 운용효과에 주목한다.

II.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기본이론

1. 개념과 용어

청약철회기간은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으로도 불리며, 한국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으로 명명된다. 그 기본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그리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이다.

⁷邹海林:《保险法》, 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7).

⁸양승규, 『보험법』, 삼지원(2005);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2001).

한·중 양국이 사용하는 용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犹豫期(유예기)”라는 표현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재고”하는 과정을 강조하지만, 한국 법문은 “청약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언상 “신청 취소권”에 더 가까운 어감을 갖는다⁹.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단순한 언어관용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 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각 차를 함축한다. 즉, 중국법상의 청약철회권은 “법정 해지권”에 가깝지만, 한국법상의 청약철회권은 “취소”와 “해지”의 이중적 성격을 띤다¹⁰.

2. 법적 성질

청약철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대립한다.

가. 법정 해지권설 — 중국 학계의 다수설. 청약철회권은 법률이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한 법정 단독 해지권으로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 해지권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도 없다¹¹. 온스이양(温世扬) 교수는 그 행사가 “무인(無因) 해지”로서 법정 단독 해지권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형성권설 —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자의 응답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성권의 전형적 특징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다. 철회권설 — 한국 학계의 다수설. 청약철회권은 “신청 철회권”(withdrawal right)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청약(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계약관계를

⁹한국법에서 “청약”은 “요약/신청”, “철회”는 “취소/철회”에 해당하며, 양자가 결합되어 “보험계약 신청의 철회”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한기정, 『보험법』(제 4 판), 박영사(2025) 참조.

¹⁰영미법상 소비자 보험계약의 철회권(withdrawal right / right of cancellation)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CLARKE, Malcolm A.,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6th ed). Informa Law (2009) 참조.

¹¹温世扬 : 《保险法》(第 3 版), 法律出版社(2016).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라는 견해이다¹². 박세민 교수는 본 권리의 행사는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계약 해지와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본다.

라. 임의해지권설 — 청약철회권을 법률이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해지권의 일종으로 보는 소수설로서, 『민법전』상의 임의해지 조항에 유사하다고 본다.

본고는 청약철회권이 철회권적 성격과 형성권적 성격을 겸유한다고 본다. 행사방식 측면에서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권에 해당하고, 법적 효과 측면에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는 점에서 철회권에 가깝다.

3. 법리적 기초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정당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보 비대칭의 시정. 보험계약은 위험전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성·전문성이 높고, 일반 소비자가 약관의 실질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청약철회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사후적 숙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에 대한 제도적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¹³. 둘째, 교섭력의 균형. 전문 금융기관인 보험자와 비전문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현저한 교섭력 격차가 존재하므로, 청약철회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재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회복시킨다. 셋째, 판매오도의 사전 억지.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 구조는 과장설명·일면적 진술·위험 은닉의 유인을 내포하므로, 청약철회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사후적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제공한다.

¹²박세민, 『보험법』(제 8 판), 박영사(2025).

¹³江朝国, 『保险法基础理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2) 참조.

넷째, 소비자 주권의 실현. 현대 소비자보호법의 핵심 이념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보장하는 것이며, 청약철회기간은 그 자유를 구현하는 구체적 제도적 수단이다¹⁴.

4. 기능적 위치

청약철회기간 제도는 사전 예방기능과 사후 구제기능의 이중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 예방기능은 모집인이 청약철회권의 존재를 의식하여 설명의무를 보다 신중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사후 구제기능은 판매오도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III. 중국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

1. 입법연혁

중국의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는 업계 자율 → 행정규범 → 법령적 확인이라는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가. 태동기(1999-2009 년). 1999 년 전후 中国人寿(China Life)·平安人寿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장기 생명보험상품에 “10 일 청약철회” 약정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주로 홍콩 및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¹⁵. 이 시기 청약철회는 회사 자율 규제 성격이 강하고 통일적 법령 근거가 결여되어 있었다.

¹⁴미국법상 보험소비자 보호기능에 관한 체계적 논의는 JERRY II, Robert H. & RICHMOND, Douglas R., Understanding Insurance Law (6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참조.

¹⁵梁鹏：《保险法热点问题讲座》，中国法制出版社(2008)。

나. 행정규범기(2009-2014 년). 2009 년 舊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监会)는 『인신보험 신형 상품 정보공시 관리방법』¹⁶을 제정하여 부령 차원에서 인신보험 신형 상품의 청약철회기간을 10 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2014 년 舊 보감회와 舊 은감회는 공동으로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 판매행위 추가 규제에 관한 통지』¹⁷를 발표하여, 상업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예금이 보험으로 둔갑”하는 등의 판매오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대리(이른바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상품의 청약철회기간을 15 일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 체계화기(2015 년-현재). 2015 년 舊 보감회의 『인신보험회사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관리방법』은 청약철회 설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고, 2019 년 舊 은보감회가 개정한 『건강보험 관리방법』¹⁸은 장기 건강보험상품(중대질병보험·장기의료보험 등)의 청약철회기간을 15 일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공포된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¹⁹은 기존 규정을 흡수·통합하여 은행대리 채널의 15 일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2022 년 舊 은보감회는 『은행보험기관 소비자권익보호 관리방법』²⁰을 공포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의 통일적 시각에서 청약철회기간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체계화하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계약을 해소한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¹⁶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2009]제 3 호 『人身保险新型产品信息披露管理办法』.

¹⁷保监发[2014]第 3 号 『关于进一步规范商业银行代理保险业务销售行为的通知』.

¹⁸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2019]제 3 호 『健康保险管理办法』 제 25 조.

¹⁹银保监办发[2019]179 号 『商业银行代理保险业务管理办法』.

²⁰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2022]제 9 호 『银行保险机构消费者权益保护管理办法』.

특기할 점은, 현재까지 중국 『보험법』 본법은 청약철회기간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법원(法源)은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이 제정한 부령·통지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법규의 위계가 비교적 낮다.

라. NAFR 출범 이후 단계(2023 년-현재). 2023 년 5 월 중국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舊 은보감회의 보험감독 기능은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NAFR)으로 이관되었다²¹. NAFR 은 출범 이후 「보험판매행위 관리방법(保险销售行为管理办法)」(2024) 등 후속 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권 안내 및 기록보존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부령·규범성 문서 차원의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본법 차원의 명문화는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2. 현행 법규

중국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현행 규범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 차원. 『보험법』(2015 년 개정)은 청약철회기간을 직접 규율하지 않지만, 제 116 조의 보험회사의 사기금지 규정 및 제 131 조의 보험대리인 금지행위 규정²²이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상위법적 기반을 이룬다.

²¹2023 년 5 월 18 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National Administr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NAFR)이 정식 출범하여 舊 은보감회의 보험감독 기능을 흡수하였다. 동 기관은 출범 후 「보험판매행위 관리방법(保险销售行为管理办法)」(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령[2023]제 2 호, 2023 년 9 월 공포, 2024 년 3 월 시행) 등 후속 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권 안내·기록보존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²²『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2015 년 개정) 제 116 조, 제 131 조.

나. 부령 차원. 『인신보험회사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관리방법』, 『인신보험 상품 정보공시 관리방법』, 『보험대리인 감독관리규정』, 『보험판매행위 추적가능 관리 잠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 규범성 문서 차원. 舊 은보감회 및 그 전신인 보감회가 발표한 각종 통지·지침·창구지도 의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적용범위

중국 청약철회기간 제도는 주로 다음 상품에 적용된다.

가. 보험기간 1 년 이상의 인신보험계약. 가장 핵심적인 적용범위로서, 일반 생명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배당형 보험·변액유니버설·변액보험 등이 포괄된다.

나. 은행대리 채널 판매 상품. 2014 년 규정 이래 상업은행을 통하여 대리 판매되는 보험기간 1 년 이상의 인신보험상품은 청약철회기간이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일부 재산보험상품. 이론적으로 1 년 이상 재산보험(일부 공사보험·신용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주의할 점은, 단기 상해보험·1 년 이하 건강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장기 상품의 위험 차이에 대한 입법자의 차등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²³.

4. 기간의 길이

중국 청약철회기간은 “보편적 10 일”에서 “보편적 15 일”로의 이행기에 놓여 있으며, 현재 두 기간이 병존하면서 판매채널과 상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²³武亦文：《保险消费者保护法律制度研究》，法律出版社(2018)。

가. 15 일 청약철회 적용(현행 주류): (i) 은행대리(방카슈랑스) 채널 — 2014 년 保监发[2014]3 호 시행 이래 상업은행을 통해 대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청약철회기간을 15 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ii) 장기 건강보험 — 『건강보험 관리방법』(은보감회령[2019]제 3 호)에 따라 중대질병보험·장기의료보험 등의 청약철회기간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iii) 시장 자율 통일 — 소비자 보호 수준 향상 및 채널 간 규제 통일을 위해, 최근 다수 보험사는 전통적 모집인 채널 및 인터넷 채널 판매 장기 인신보험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청약철회기간을 15 일로 통일하였다.

나. 10 일 청약철회 적용(전통적 기준): 舊 보감회 『인신보험 신형 상품 정보공시 관리방법』(보감회령[2009]제 3 호)이 정한 기본 청약철회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고 서면으로 수령확인한 날부터 10 일”이다. 현재에도 은행 채널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일부 전통적 종신보험·연금보험 등에서는 10 일 기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나, 최근 신상품에서는 점차 드물어지고 있다.

다. 기산 시점. 청약철회기간은 통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고 서면으로 수령확인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이러한 “실제 수령주의”의 기산 방식은 보험계약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구체적 기간은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²⁴.

5. 행사방식과 법적 효과

²⁴실무상 보험계약자가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은 보험계약 첫 페이지의 “청약철회기간(冷靜期)”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며, 약관에 기재된 구체적 기간이 법률효력의 기준이 된다.

가. 행사방식.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보험증권 원본, 본인 신분증명, 해약신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전자적 해약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전자적 방식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나. 법적 효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계약을 해소한 경우 보험자는 10 원(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무수수료(工本费)를 공제한 후 수령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²⁵. 다만, 전자보험증권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작비용이 사실상 영(零)에 가까워졌으므로, 다수의 보험사는 사무수수료의 공제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전액 반환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명시적으로 종이 보험계약서의 우편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가 청약 전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 해약시 실제로 발생한 검진비용도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계약은 해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보험자는 어떠한 보험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매오도 시의 특별 보호. 보험사가 청약철회권을 규정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거나 모집인이 사기·오도행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법』 제 116 조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주장이 가능하며, 청약철회기간이 후발적으로 기산되거나 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행사될 수 있다.

6. 문제점

²⁵중국 舊 은보감회 『이성적 보험가입을 위한 다섯 가지 주의사항』 등 다수의 공식 소비자 위험 안내문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계약을 해소할 경우, 보험회사는 10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무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위계가 낮다. 청약철회기간 제도가 부령·규범성 문서에 분산되어 있고 『보험법』 차원의 명문 규정이 결여되어 규범효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둘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원칙적으로 1년 이하 상품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기 상해보험·건강보험 영역에서도 판매오도 문제는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셋째, 행사방식이 경직되어 있다. 서면 수령확인 등 절차적 요건이 디지털 금융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정보공시 요건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서 청약철회기간 관련 정보를 소형 활자나 전문용어로 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 다섯째, 청약철회·해약·계약취소·계약해지 등 여러 구제 수단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입법계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2025년 중국 양회(两会) 회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공성(郑功成)은 『보험법』 개정 추진의 가속화와 인신보험 犹豫期 조항의 본법 명문화 등을 공식 제언한 바 있어,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입법위계 격상이 가까운 장래의 입법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⁶.

IV. 한국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

1. 입법연혁

한국의 청약철회기간 제도 발전 경로는 중국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입법화 과정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²⁶2025년 3월 양회(两会) 회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공성(郑功成)은 『보험법』 개정 추진의 가속화와 인신보험 犹豫期 조항의 본법 명문화 등을 공식 제언하였다. 『中国消费者报』 2025년 3월 6일자 보도 참조.

가. 업계관행기(1990년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주요 생명보험사는 장기 생명보험상품에 약정 방식으로 15일 청약철회기간을 도입하였으며,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²⁷.

나. 감독입법기(2003-2020년). 2003년 한국 『보험업법』 및 시행령은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고, 舊 『보험업법』 제 102조의 4는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다²⁸. 다만 당시의 규범은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 후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구체적 운용규칙을 보완하였다.

다. 체계화 입법기(2020년-현재). 2020년 3월 한국 국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여 2021년 3월 25일 시행하였다. 동법은 청약철회권을 금융소비자의 핵심 권리 가운데 하나로 명문화하고²⁹, 그 적용범위·행사방식·법적 효과 등 주요 규율을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종전 각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철회권 규정을 하나의 법적 틀로 정리하였다.

『금소법』의 제정은 아시아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보험·은행·금융투자·여신 등 서로 다른 금융업태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한 것은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토착화 산물이라는 평가가 있다³⁰.

²⁷장덕조, 『보험법』(제 7 판), 법문사(2025).

²⁸舊 한국 『보험업법』 제 102조의 4(청약의 철회 등).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따라 동 조항은 삭제되었고, 관련 규율은 『금소법』 제 46조로 통합되었다.

²⁹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³⁰국제적 차원에서 OECD와 G20가 공동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고위급 원칙은 철회권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기준에 관한 중요한 참고문헌이다. See OECD,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ECD Publishing (2011), 특히 Principle 4 (Disclosure and Transparency) 및 Principle 6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참조.

2. 현행 법규체계

한국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법원(法源)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 차원. 『금소법』 제 46 조가 청약철회권을 직접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보험업법』·『상법』 제 4 편(보험) 등도 일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나. 대통령령 차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청약철회권의 구체적 적용 상품 범위·행사방식·산정방식 등을 보완 규정한다.

다. 총리령 및 감독규정 차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포함된다.³¹

이러한 “법률 — 시행령 — 시행세칙 — 감독규정”의 다층적 규범구조는 일본 및 독일 금융법체계와 유사하며, 비교적 정치(精緻)한 규범망을 형성한다.

3. 적용범위

『금소법』 제 46 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은 다음 상품에 적용된다.

가. 보장성 상품: 생명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 상품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나. 저축성·투자성 상품: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적용되나, 변액보험 등 투자성격이 강한 상품의 경우 적용요건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의 성격과 투자성 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금소법』 제 46 조 제 1 항 제 2 호의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 규율(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7 일

3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021.

이내)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다수의 보험사는 변액보험에도 보장성 상품 기준인 “15 일/30 일”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².

다. 제외사유: 다음 상품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 보험기간 90 일 미만의 단기 보험, 법인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일부 보험계약, 법령에 명문으로 제외된 기타 사유(특정 단체보험 등)³³.

중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적용범위는 “1 년 이상”의 장기상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어, 보다 강한 금융소비자 보호 지향을 반영한다.

4. 기간의 길이와 기산

한국 청약철회기간은 “이중 기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 특징이다. 『금소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보장성 상품의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 640 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다³⁴.

다만, 만 65 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위 30 일 기간이 45 일로 연장된다³⁵. 이는 고령자에 대한 추가적 재고 시간

³² 변액보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 1 항 제 2 호의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 규율(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7 일 이내)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보장성 상품 기준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기정, 『보험법』(제 4 판), 박영사(2025) 참조.

³³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³⁴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원문: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 640 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³⁵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37 조 참조. 또한 박세민, 『보험법』(제 8 판), 박영사(2025) 참조.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한국법이 청약방식 및 계약자 속성에 따라 한층 더 세분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 기산방식은 “실제 수령주의”와 “권리남용 방지”의 양 원칙을 조화하고자 한다. (i) 외측의 “30 일” 제척기간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증권 교부를 지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철회권 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계약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ii) 내측의 “15 일” 기간은 보험사가 가능한 한 신속히(통상 15 일 내) 보험증권을 송부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30 일 내 언제든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을 안기게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통신판매(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 한국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³⁶가 청약철회권의 구체적 행사 기간·효력 발생 시점·금전 반환 산정방식 등을 추가로 보완 규정하여, 원격 계약체결 환경에서의 소비자 재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5. 행사방식

한국법상 청약철회권의 행사방식은 비교적 유연하다.

가. 서면 방식: 우편·팩스 등 전통적 서면 통지가 포함된다.

나. 전자적 방식: 전자우편,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전자적 수단도 서면 방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중국법에서는 아직 명문으로 완전히 인정되지 못한 부분이다³⁷.

³⁶한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청약의 철회 등).

³⁷박세민, 『보험법』(제 8 판), 박영사(2025).

다. 구두 방식의 제한: 단순 구두 의사표시는 사후 입증 곤란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통화 녹음 등은 구두 표시의 매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정 방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도달주의 v. 발신주의: 『금소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보험계약자가 철회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사의 실제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나, 입증책임 배분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6. 법적 효과

가. 전액 반환 원칙.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후, 보험사는 수령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수료·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자 계산. 보험사가 보험료 반환을 지체할 경우, 법정이율(한국 민법상 일반적으로 연 5%)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은 상법상 상행위(상법 제 46 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할 때 적용될 법정이율이 민법 제 379 조의 연 5%인지 상법 제 54 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인지에 관하여는 보험료 반환 채권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인지 상사채권의 반환인지)을 둘러싸고 학설적 다툼이 존재한다³⁸.

³⁸한국 민법 제 379 조는 연 5%의 법정이율을 규정하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54 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보험료 반환 채권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반환인지 상사채권의 반환인지)을 둘러싸고 학설상 다툼이 있다. 박세민, 『보험법』(제 8 판), 박영사(2025) 참조.

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의 처리. 청약철회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철회권 행사 후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판매자의 책임. 보험사 및 모집인은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청약철회권 행사와 병존할 수 있다.

7. 제도적 특징

첫째, 입법체계의 일원화. 『금소법』을 통하여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규범 단편화를 방지하였다. 둘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전자적 행사방식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하고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소비자의 권리실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였다. 셋째, 기간 산정의 이중 보장. “15 일/30 일 중 먼저 도래”라는 이중 기산방식은 공평성과 운용가능성을 양립시켰다. 넷째, 설명의무와의 긴밀한 연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권 외에도 계약 무효 주장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복수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V. 한중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비교분석

1. 입법체계 비교

입법체계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금소법』을 통하여 금융업태 전반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통일하고 “기본법 — 시행령 — 감독규정”의 3층 규범구조를 구축한 반면, 중국은 관련 규정이 부령·규범성 문서에

산재해 있고 『보험법』 본법은 청약철회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입법 위계가 상대적으로 낮다.

구분	중국	한국
최상위 법적 근거	『보험법』(간접 규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직접 규율)
부령·시행령	舊 은보감회 부령	금융위원회 시행령·총리령
업계 자율	중국 보험업협회 자율규범	한국 보험협회 자율규범
체계화 정도	낮음, 규범 분산	높음, 통일적 틀

2. 적용범위 비교

중국 청약철회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 이상의 인신보험상품”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단기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원칙적 적용, 예외 제외” 방식을 채택하여 보장성·저축성·투자성 보험을 모두 포섭하고, 90 일 미만 단기 보험·일부 단체보험 등만을 명문으로 제외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제도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반영한다. 중국 입법자는 장기 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더 강조하는 반면, 한국 입법자는 금융소비 전반의 보호 필요성을 우선시한다.

3. 기간의 길이 및 기산 비교

중국은 “10 일(전통)/15 일(은행·장기건강 등)”의 단일 기산 방식을 채택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한국은 “15 일/30 일 중 먼저 도래”의 이중 기산방식을 채택한다.

한국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가 보험증권 교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약철회기간의 불확정성을 방지한다. 둘째, 원격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재고권을 보장한다. 셋째, 현대 전자상거래의 “7 일 무사유 반품” 등 소비자 권리와 기간 설계 논리에서 정합성을 갖는다³⁹. 이에 비해 중국의 단일 기산 방식은 단순하기는 하나,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적시에 송달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사실상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행사방식 비교

중국 실무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여전히 서면 방식 중심이며, 일부 보험사가 전자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금소법』은 전자적 방식의 법적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발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실현 비용을 낮추었다.

5. 법적 효과 비교

양국의 법적 효과는 대체로 유사하다. 즉,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세부에서 차이가 있다.

³⁹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2013 년 개정) 제 25 조의 “7 일 무사유 반품” 규정과 비교.

가. 중국은 “사무수수료”(약 10 원 한도) 공제를 허용하나, 한국은 어떠한 비용 공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은 보험사의 반환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나, 한국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 청약철회기간 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처리 규정에 있어 한국이 더 상세하다.

이러한 차이의 실무적 효과는 분쟁해결 단계에서 두드러진다. 한국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청약철회 관련 조정사례는 보험사의 보험증권 교부의무·청약철회권 안내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여 철회권 행사를 허용하고 지연이자 가산을 명한 사례가 상당수 축적되어 있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사무수수료의 적정성·전자적 해약 신청의 효력 등에 관한 통일적 분쟁조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쟁의 실제 처리 결과가 보험사별·법원별로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⁴⁰.

6. 판매오도 구제와의 연결 비교

중국 『보험법』 제 116 조의 사기금지 조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청약철회기간 제도와 병존하나, 양자 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부족하다. 보험계약자는 판매오도에 직면할 경우 여러 구제 경로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 배분도 복잡하다.

⁴⁰ 한국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청약철회 관련 조정사례는 주로 보험사의 보험증권 교부의무·청약철회권 안내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철회권 행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 각 연도판 참조.

한국 『금소법』은 통일적 금융소비자 권리체계를 통하여 청약철회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 무효 주장 등 구제수단을 통합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여 청약철회권과의 병행 행사를 인정한다.

7. 정보공시 의무 비교

중국 『인신보험 상품 정보공시 관리방법』은 보험사로 하여금 약관의 잘 보이는 위치에 청약철회기간 내용을 명시하고 판매 과정에서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구한다. 한국 『금소법』 및 시행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사항설명서에 표준양식으로 청약철회권 및 그 행사방법을 부각 표시하고, 소비자의 서명 확인을 요구한다.

한국의 정보공시 규정은 보다 세밀하고 운용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입법 사상을 반영한다.

중국 측에서도 2017 년 『보험판매행위 추적가능 관리 잠정방법(保险销售行为可回溯管理暂行办法)』(이른바 “쌍록(双录)” 제도)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판매 과정을 녹음·녹화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공시 위반에 대한 사후적 확인 가능성을 제고하였다⁴¹. 그러나 청약철회권 안내사항의 표준양식·시각적 강조·소비자 별도 서명 확인 등 사전적 정보공시 의무 그 자체에 관한 명문 규정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후적 “회복적 통제”와 사전적 “예방적 통제” 간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된다.

8. 사법실무 및 판례 비교

⁴¹ 中国保监会 『保险销售行为可回溯管理暂行办法』(2017 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판매 과정에서 모집 단계의 녹음·녹화 기록 보존(이른바 “双录”)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사법실무는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운용 실태를 관찰하는 중요한 창(窓)이다. 양국 모두 일정한 재판 규칙을 형성하였으나 그 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 중국. 통일적 재판 규칙은 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존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상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1)』(법석[2009]12 호), 같은 해석(2)⁴², 같은 해석(3)⁴³, 같은 해석(4)⁴⁴를 차례로 공포하여 보험계약 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통일적 재판 규칙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보험법 사법해석(3)』은 주로 인신보험계약 분쟁의 재판 규칙을 다루어 청약철회기간 관련 분쟁의 처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공개된 재판문서에서 청약철회기간과 관련한 전형적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청약철회 조항의 안내·설명 의무 위반. 보험사가 청약철회 조항의 안내·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계약 무효 또는 기간 도과 후 해약을 주장하는 사건이 다수 발견된다. 법원은 『보험법』 제 17 조 면책조항 설명 의무 법리를 기초로, 판매 추적 가능 녹음·녹화(이른바 “쌍록(双录)”)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판매오도와 청약철회권의 연결.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기간 도과 후 모집인의 사기·오도행위를 알게 되어 『보험법』 제 116 조 및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⁴²中国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若干问题的解释(二)』(法释[2013]第 14 号), 2013. 5. 31. 공포, 2013. 6. 8. 시행.

⁴³中国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若干问题的解释(三)』(法释[2015]第 21 号), 2015. 11. 25. 공포, 2015. 12. 1. 시행. 동 해석은 주로 인신보험계약 분쟁의 재판 규칙을 다룬다.

⁴⁴中国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若干问题的解释(四)』(法释[2018]第 13 号), 2018. 5. 14. 통과, 2018. 7. 31. 공포, 2018. 9. 1. 시행.

구제를 청구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법원은 통상 판매오도의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지만, “쌍록” 증거가 보강될 경우 입증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3) 청약철회기간 내 해약의 법적 효과. 보험계약자의 해약 신청에 대하여 보험사가 처리를 지체하거나 부적정한 공제를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법원은 약관에 따라 공제 가능 비용(사무수수료·검진비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초과 공제분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

4) 전자적 행사 방식의 효력. 보험판매의 온라인화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공식 앱·공식 위챗·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약 신청을 한 후 보험사가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법원은 전자통신 기록·타임스탬프·보험사 시스템 기록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실질심사” 입장을 취한다.

나. 한국. 한국 대법원은 『금소법』 시행 전후를 통하여 청약철회권의 행사방식·효력 발생 시점·설명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등에 관한 판례를 형성하여 동 제도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비교적 체계적인 사법기준을 마련해 왔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분류별 지도 및 창구지도 의견을 통하여 실무상 빈번한 철회권 분쟁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다. 비교적 시사점. 첫째, 중국은 통일 재판 규칙의 형성이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감독지도에 더 의존한다. 둘째, 양국 법원 모두 판매오도와 청약철회권의 연결 지점에서 소비자 친화적 입장을 취하지만, 입증책임 배분의 구체적 규칙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셋째, 전자적 행사방식은 양국 실무에서 점차 인정되고 있으나, 중국은 통일적 성문규범이 결여되어 있어 입법적 명문화가 시급하다.

VI. 중국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1. 입법 위계의 격상: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보험법』 편입

현행 중국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법적 근거는 주로 부령·규범성 문서에 의존하고 있어 입법 위계가 낮다. 향후 『보험법』 개정 시 청약철회기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i)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적 성질, (ii) 적용상품 범위, (iii) 기간의 길이와 기산 규칙, (iv) 행사방식과 법적 효과, (v) 보험사의 안내의무 및 위반 시 법적 효과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법』 차원의 명문 규정을 통하여 제도의 규범효력을 격상시키고, 하위규정의 세부화에 명확한 상위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금소법』 제 46 조의 규범화 경로와 정합적이다.

2. 적용범위의 합리적 확대

청약철회기간의 적용범위를 “1 년 이상 인신보험상품”의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금소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i) 보험기간 90 일 이상의 모든 보험상품, (ii) 전화·인터넷 등 원격 판매 보험상품(보험기간이 짧더라도), (iii) 은행대리 채널 판매 모든 보험상품, (iv) 단체보험 중 보장성 부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보험기간이 극히 짧은 여행보험·즉시 효력 발생 손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등) 등 제외사유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 기간 기산방식의 최적화

한국의 “이중 기산” 방식을 참고하여 청약철회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i)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지체 송달함으로써 청약철회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위험을 차단하고, (ii) 원격 계약환경에서의 실질적 재고권을 보장하며, (iii)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전자적 행사방식의 명문화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발맞추어 입법을 통하여 전자적 청약철회 행사방식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i)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모바일 앱·전자우편 등을 통한 해약 신청의 법적 효력 인정, (ii) 한국의 발신주의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효력 발생, (iii) 전자증거의 인정규칙과 입증책임 배분에 관한 보완 규정 등이 필요하다.

5. 정보공시 의무의 강화

보험사의 청약철회기간 관련 정보공시 의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i) 약관의 잘 보이는 위치에 굵은 글씨와 별도 단락으로 청약철회기간 관련 내용을 부각 표시, (ii) 청약서·계약확인서에 청약철회기간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의 서명 확인 요구, (iii) 판매 과정에서 모집인의 청약철회권 안내 사실에 관한 녹음·녹화 보존 요구, (iv) 보험사가 안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의 연장 또는 기간 제한 적용 배제 등이다.

6. 판매오도 방지 기제의 정비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실효적 운용은 판매 단계의 규제 적합성에 의존한다. (i) 보험모집인 자격관리 및 지속적 교육의 강화, (ii) 판매행위 추적가능 관리제도의 정비 및 녹음·녹화(이른바 “쌍륙”)의 전면 시행, (iii) 판매오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민사배상의 강도 제고, (iv) 모집인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및 부적격자의 타사 이직 제한 등이 필요하다.

7.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의 통합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소법』의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내 금융소비자보호 전용 장(章)의 신설을 검토하여 보험·은행·금융투자 등 서로 다른 금융업태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⁵. 이러한 체계화 통합은 규범 단편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권리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VII. 결론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제도는 현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법정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거래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과 사적 자치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청약철회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법체계·적용범위·기간의 길이·행사방식·정보공시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2020년 제정한 『금소법』을 통하여 종전 분산되어 있던 청약철회 규정을 통일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정비하고, “15 일/30 일 중 먼저 도래” 이중 기산방식의 도입, 전자적 행사방식의 법적 효력 인정, 판매오도 구제와 청약철회권의 연결 명문화 등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화와 현대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⁴⁵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金融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指导意见』(国办发[2015]第 81 号)는 이러한 통합 입법의 윤곽을 일정 정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부령 차원에서 비교적 완비된 청약철회기간 제도를 갖추었으나, 입법 위계가 낮고 적용범위가 좁으며 행사방식이 경직되어 있고 다른 구제수단과의 연결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보험법』 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입법경험을 적절히 참고하여 (i) 『보험법』 차원에서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명문화, (ii) 적용범위의 확대, (iii) 기간 기산 규칙의 최적화, (iv) 전자적 행사방식의 법적 효력 명문화, (v) 정보공시 의무의 강화, (vi) 판매오도 방지 기제의 정비, (vii)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의 점진적 통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 연구를 통하여 한·중 양국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의 공통된 추세도 발견된다. 금융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상품의 복잡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한 차원 높은 정비는 소비자 권익의 실효적 보장, 금융시장 질서의 유지, 그리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저서>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박세민, 『보험법』(제 8 판), 박영사, 202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장덕조, 『보험법』(제 7 판), 법문사, 2025.

한기정, 『보험법』(제 4 판), 박영사, 2025.

2. 외국어문헌

[중국어]

<저서>

樊启荣：《保险合同法论》，中国法制出版社，2017。

江朝国：《保险法基础理论》，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2。

梁鹏：《保险法热点问题讲座》，中国法制出版社，2008。

任以顺：《保险法学》，北京大学出版社，2014。

温世扬：《保险法》(第 3 版)，法律出版社，2016。

武亦文：《保险消费者保护法律制度研究》，法律出版社，2018。

邹海林：《保险法》，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7。

[영어]

<저서>

BIRDS, John & LYNCH, Ben et al.,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15th ed). Sweet & Maxwell, 2022.

CLARKE, Malcolm A.,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6th ed). Informa Law, 2009.

JERRY II, Robert H. & RICHMOND, Douglas R., *Understanding Insurance Law* (6th ed).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보고서>

OECD,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ECD Publishing, 2011.

초 록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猶豫期, cooling-off period)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체계의 핵심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거래 양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교섭력 격차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한다⁴⁶.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법문화권에 속하면서 대륙법계의 전통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금융시장 발전단계 차이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서 상이한 길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입법연혁, 법적 성질, 적용범위, 행사방식, 법적 효과 및 소비자보호 기제 등 여러 차원에서 한·중 양국 청약철회기간 제도를 비교한다. 검토 결과, 한국은 2020 년에 제정·2021 년 3 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통해 종전 『보험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청약철회 규정을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정비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라는 이중 기산 방식을 명문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보험법(保險法)』과 금융감독기관(舊 보험감독관리위원회, 現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부령(部令)·통지(通知) 등을 통해 청약철회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위계가 비교적 낮고 적용범위가 좁으며 행사 요건이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하여 (i) 『보험법』 차원에서 청약철회기간 제도의 입법위계 격상, (ii) 적용범위의 합리적 확대, (iii) 전자적 행사방식의 명문화, (iv) 판매오도(銷售誤導) 방지와 정보공시의무 강화 등을 제안한다.

<주제어> 보험계약, 청약철회기간,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금융소비자 보호, 한중 비교법

⁴⁶양승규, 『보험법』, 삼지원(2005) 참조.

摘 要

保险合同犹豫期制度 (cooling-off period) 是金融消费者保护法律体系中的重要环节,旨在通过赋予投保人在一定期间内单方解除合同的权利,矫正保险交易双方信息不对称、议价能力悬殊的结构性缺陷。中韩两国同属东亚法系,保险立法在继受大陆法系传统的同时,又因金融市场发展阶段不同而形成各具特色的制度安排。本文从立法沿革、法律性质、适用范围、行使方式、法律后果及消费者保护机制等多个维度,对中韩两国保险合同犹豫期制度进行比较。研究表明,韩国通过 2020 年制定的《金融消费者保护法》,将分散于《保险业法》中的犹豫期规则整合至统一的金融消费者保护框架,确立“收到保单之日起 15 日与缔约之日起 30 日孰先到期”的双重起算方式;而中国虽然在《保险法》及金融监管部门规范性文件中已建立犹豫期制度,但立法位阶较低、适用范围较窄。基于比较,本文建议中国在《保险法》层面提升立法位阶,扩大适用范围,明确电子化行使方式,强化销售误导防控与信息披露义务。

关键词: 保险合同; 犹豫期; 冷静期; 金融消费者保护; 中韩比较法